

등록번호	감사안전팀-1218
등록일자	2025.07.10
결재일자	2025.07.10
공개구분	공개

담당	팀장	경영본부 장		
윤종석	김홍령	07/10 이기봉		
협 조				

## 2025년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계획

2025. 7.

# 2025년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계획

7~8월에 무더운 날씨가 전망되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I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보건조치)

## II 추진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25. 6. 1.시행)

- 2025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6. 18일 기준, 질병관리청)

총 발생인원			226명	사망			없음	
			지역별 현황			연령별 현황		
시간대	발생 건수	비율(%)	지역	발생 건수	연령대	건수	비율(%)	
10~12시	59명	26.1%	서울	51명	80대	22명	9.7%	
15시~17시	53명	23.4%	경기	31명	70대	31명	1.7%	
			강원	20명	60대	42명	18.6%	
			경북	18명	50대	33명	14.6%	
			경남	18명	40대	34명	15.0%	
			전북	16명	30대	38명	16.8%	
					20대	26명	11.5%	

### <폭염특보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폭염경보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III 추진개요

- 시 행 : 2025년 7월 ~ 9월
- 대 상 : 전 임.직원 및 수급업체(환경미화, 고객.선수 식당 등)
  - ※ 중점대상 : 4개(환경미화, 누비자 운영지원, 인공암벽장)아외 활동 부서 관리
- 내 용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 폭염대비 사업장 자체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교육
  - 도급.위탁.용역 시 온열질환 예방 대책
  -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상황 보고 체계 유지

### IV 세부추진계획

#### 1. 부서별 중점 온열질환 예방조치

부서명	예방 조치
공통사항 (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문 부착 및 온 . 습도계 비치 측정</li> <li>-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방법 교육 시행</li> <li>- 체감온도 31℃이상 폭염 작업시 : 적절한 휴식(2시간이내 10분이상 휴식), 민감군관리, 보냉장구 활용, 작업시간 단축</li> <li>- 체감온도 35℃이상 폭염 작업시 : 충분한 휴식(2시간이내 20분이상 휴식), 민감군관리, 보냉장구 활용, 작업시간 단축, 응급조치 준비</li> <li>- 체감온도 38℃이상 작업 중지</li> </ul>
감사 안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염 중점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순찰</li> <li>*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폭염 주의.경보 시 수시점검(유선)</li> <li>- 온열질환 민감군(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관리</li> <li>- 수급업체(선수식당, 고객식당 등) 위생점검 등</li> </ul>
총무회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상황 대비 인력 및 행정지원 등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li> </ul>
CS 레포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적정온도 관리(26~28℃) 및 수급업체(식당,미화원 등) 관리</li> <li>- 급식소(고객식당,오토캠핑장)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붙임5.참조)</li> <li>- 폭염시(경고) 인공암벽장 13~15시 야외 암벽시설 이용 제한(대안장구)</li> <li>- 그늘 및 무더위 쉼터 공간 확보(암벽장, 캠핑장 등)</li> </ul>
누비자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근무자 대상 시원한 물, 식염 포도당, 보냉 장구 지급</li> <li>- 폭염 작업시 충분한 휴식 및 작업시간 단축</li> <li>- 자전거 무료교실 폭염 시간대 교육시간 조정</li> </ul>
경주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업체(선수식당)위생점검 및 종사자 관리(붙임5.참조)</li> </ul>

## 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

- 부서별 **맞춤 폭염 예방 물품(쿨토시, 식염 포도당, 물 등) 및 행동 요령 등 비치**
- 전산장비, 방송장비, 기계실 등 적정 온도 관리 및 수시 점검
- **체감온도 31℃이상**이 되는 작업장(아외)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붙임. 체감온도 기록표)
-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교육
  -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이 있는자)
  - 폭염 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주기적인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작업 시작 전 체온 측정 등)
  - **작업시간 탄력조정 및 휴식 시간 추가 제공**(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검토)

## 3. 폭염대비 사업장 자체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교육·홍보

- 폭염대비 사업장 자체 점검
  - 점검대상 : 모든 사업장(폭염 노출 사업장 중점)
  - 점검자 : 감사안전팀 (팀장 외 안전·보건·재난관리자 3명)
  - 점검내용 : **온열질환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온습도계 비치,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등**
- 부서별 온열질환 예방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자 순회점검 시 예방교육 실시**
  - 각 부서별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주관 TBM(작업전 안전점검 회의) 실시**
  - 작업 전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온열질환 기본수칙 준수, 기상 상황 공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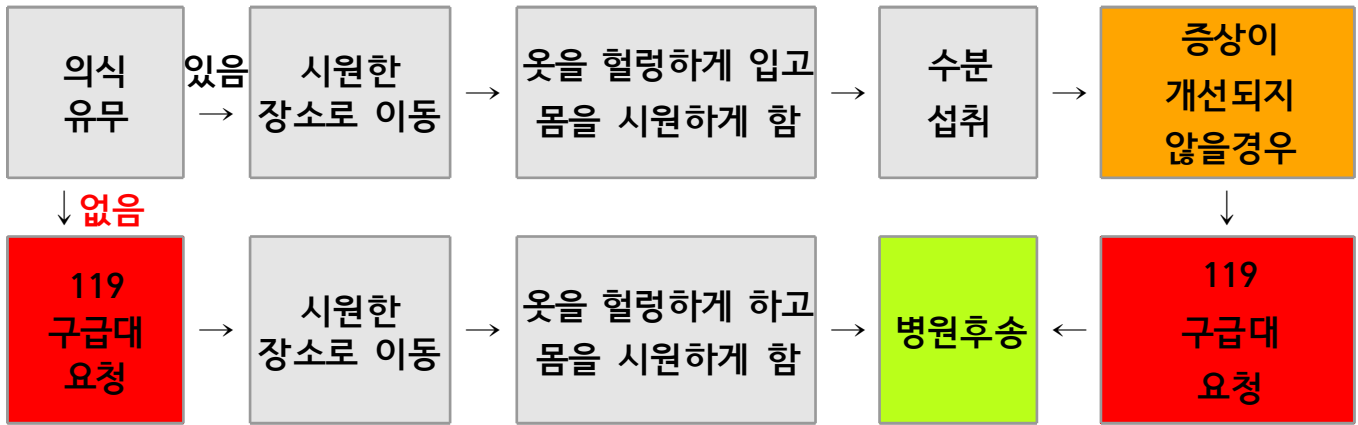
## 4. 수급업체 온열질환 예방 대책

-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
-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미흡시 즉시 개선조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점검**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사용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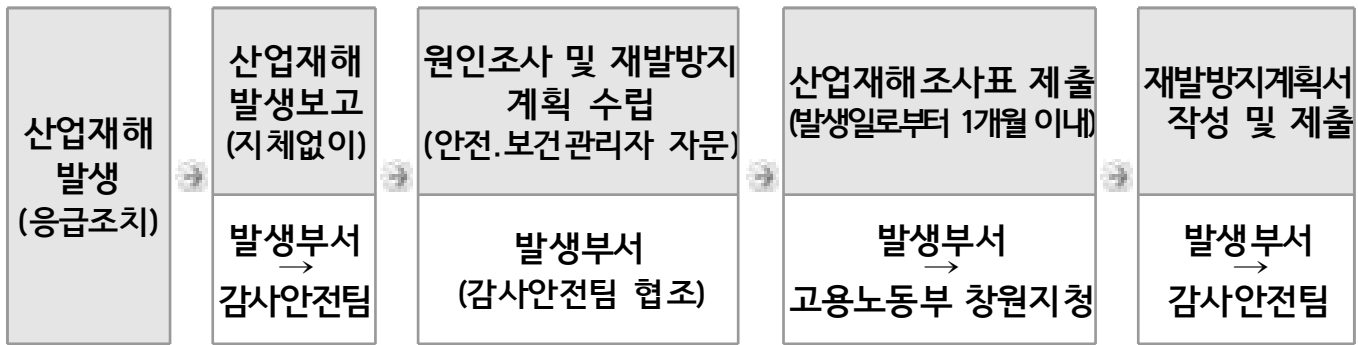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 5.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응급 조치 및 상황보고체계 유지

### ○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119신고



### ○ 온열질환 발생 시 상황보고 체계



### ○ 온열질환 민감군

- 만성 질환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체온조절 및 순환 문제 발생 가능성
- 야외작업자: 지속적인 열에 노출되는 환경
- 냉방 취약계층: 냉방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취약 환경

### ○ 온열질환 주요 증상

- 피부와 얼굴: 얼굴이 붉고, 뜨겁고 건조한 피부 → 체온 상승 징후
- 신체 반응: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땀 감소, 빠른 맥박
- 의식 변화: 무기력감, 졸림, 의식 저하
- 소화기 증상: 구토, 설사, 복통 발생

## 5. 체감온도에 따른 위험 수준 요약(체감온도 산출 방법은 붙임4 참조)

단계	체감온도(°C)	위험 수준	주요 조치
관심	31°C 이하	쾌적/정상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수분 섭취)
주의	33°C 이상	주의 필요	작업시간 조정, 민감군 관리, 무더위 시간대 활동 최소화(적절한 휴식)
경고	35°C 이상	건강위협 (온열질환 가능성)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활용, 작업시간 단축
위험	38°C 이상	심각 (응급상황 가능성)	작업 중단, 냉방시설 대피, 응급조치 준비 및 긴급 상황 시 신고

※ 부서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 V 행정사항

- 2025년 폭염대비 온열질환 계획 부서통보 : 2025. 7. 9.
- 폭염관련 정보제공 : 공단 그룹웨어 “안전보건 경영게시판” 활용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 실시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1부.

2.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1부.

3. 열사병 응급조치 방법 1부.

4. 체감온도 기록부 1부.

5. 식당 위생관리 점검표 1부.